주체의 사회주의법은 로동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

김명목

녀성인권보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생활의 독자적인 분야인 로 동생활에서 녀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것이다.

너성들에게 로동생활령역에서 인권을 보장한다는것은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 남자들 과 꼭같은 로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김일성전집》제4권 64~65폐지)

어느 사회에서나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문제는 녀성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제기되며 따라서 로동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제도의 정치법률적성격과 특징을 규정하는 척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인 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창조적로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보람찬 삶을 누 려나갈수 있도록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법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7월 30일 발표하신 력사적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는것을 힘있게 선언하고 특히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동생활령역에서의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법률적기초가 마련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주체61(1972)년 12월 27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주체67(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주체97(2008)년 1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회보장법》(주체97(2008)년 1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주체99(2010)년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주체99(2010)년 12월 22일) 등이 채택되여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와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사회주의법은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이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녀성들에게 평등한 직업보장의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로동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근본문제는 녀성들에게 직업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직업을 가지는것은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근본조건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로동의 권리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직업에 관한 문제에 귀착되는것이다.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직업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진보성을 규정

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로동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에게는 성별과 민족별, 인종 등 그 어떤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직업보장의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 법》은 직업에서의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제5조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제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직업의 선택과 직업보장에서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성들과 평등한 녀성들의 권리를 선언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는 매개 개별적인 근로자들에게 로력배치제도를 통하여 직업을 보장한다. 따라서 로력배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것은 곧 직업보장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너성권리보장법은 너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제하면 서 로력배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제적의 금지를 엄격히 법화하고있다.

너성권리보장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업원을 받는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녀성이라는것을 리유로 차별할수 없다는것과 결혼이나 임신, 해산과 같은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데 대한 법적의무를 뚜렷이 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결혼이나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하여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낼수 없다는것을 법화하고있다.

이 모든 법적규제는 녀성들로 하여금 직업보장에서 남성들과 꼭같은 평등한 권리를 보 장받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이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녀성들에게 평등한 로동보수의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직업보장의 권리와 함께 일한것에 따르는 로동보수의 권리는 사회적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회에서 생산된 사회적생산물에 대한 분배방식, 분배제도는 사회제도에 따라 같지 않다. 사회적생산물에 대한 분배방식이 어떻게 되여있는가, 분배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제되며 해당 사회의 인민적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것으로 하여 로동생활의 주인으로 되며 분배에서도 주인으로 되게 된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며 근로자들은 일한것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분배제도가 확립된다. 사회주의분배제도는 로동의 질과 량을 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며 성별이나 민족별과 같은 그 어떤 요인에 의한 분배에서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동보수에서의 차별을 금지할데 대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동일로동에 대한 동일보수의무를 명백히 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는것을 사회주의분배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녀성권 리보장법에서도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꼭같은 로동보수를 주는것을 기관, 기 업소, 단체의 법적의무로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로동에 따라 일한것만큼 분배할데 대한 사회주의분배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분배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할수 있도록 담보한다.

로동보수에서의 차별을 금지할데 대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녀성들에 대한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판정에서 평등을 보장하도록 법화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로동보수 즉 생활비는 매개 근로자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에 기초하여 계산지불된다.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가 생활비계산의 기초로 되는것만큼 로동보수에서의 평등을 보장하자면 녀성근로자들의 기술자격이나 기능급수를 판정하는데서 공정성을 보장하며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너성권리보장법에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너성들의 기술자격이나 기능자격, 급수를 판정하는데서 너성이라는 리유로 차별하지 말데 대하여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너성들에 대한 동등한 분배의 전제를 확고히 마련하고있다.

로동보수에서의 평등을 담보하는 공화국 녀성권리보장제도에 의하여 우리의 녀성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다 내여 일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 한것만큼 평등한 분배를 받으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이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녀성들에게 로동보호와 휴식의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로동보호와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녀성들은 힘든 로동에서 제한성을 가지며 남성들보다 로동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을 더 쉽게 그리고 심하게 받는다. 녀성들은 사회에 나가 일하고도 적지 않은 시간을 가정일에 바쳐야 한다. 녀성들은 임신, 해산, 젖먹이와 같은 특수한 생리적특성을 지니고있다. 어머니들의 건강상태는 태아의 발육과 어린이들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녀성들의 특성에 맞게 로동보호와 휴식에서 특별한 조건을 규제하고 보장하여야 녀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으며 녀성들에게 로동생활령역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할수 있다.

녀성들의 로동보호와 휴식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녀성들의 생리적특성과 체질을 고려하여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도록 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규에서는 녀성들의 생리적특성과 체질을 고려하여 알맞는 직종에 배치할데 대하여 그리고 녀성권리보장법은 로동행정지도기관이 녀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통제할데 대한 의무를 규제하고있으며 로동보호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로동보호법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녀성근로자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직종에 배치할데 대한 의무를 규제함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부문, 유해부문에서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도록 녀성로동이 금지된 직종을 명확히 규제하고 금지된 직종에 대한 녀성로력배치를 엄금하고있다.

너성들의 로동보호와 휴식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너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법화하는것이다.

녀성근로자들의 생리적특성에 맞는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는것은 녀성 로동보호의 필수적요구이다.

로동보호법규범들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이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녀성개별위생실, 탈의실, 목욕실 등을 꾸려주며 필요한 물자와 의약품을 로동보호자금으로 갖추어놓는것 등을 구체적인 의무로 규제하고있다.

녀성들의 로동보호와 휴식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법화하는것이다.

해당 국가가 실시하는 녀성정책의 진보성은 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산전산후휴가제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이 해산을 전후로 하여 집중적으로 쉬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산전산후휴가제도를 법화하고있다.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도는 휴가권리의 발생조건이 녀성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정되여있다. 즉 정기 및 보충휴가와는 달리 근속로동년한이나 다른 형태의 휴가에 관계없이 임신한 녀성들은 해산을 전후로 하여 의무적으로 산전산후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휴가권리를 부여하고 녀성근로자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건전한 양육을 보장할수 있도록 산전산후휴가기일이 가장 충분하게 설정되여있다.

우리 나라 산전산후휴가제는 휴가기간의 물질적보장수준이 가장 높게 설정되여 녀성 근로자들에게 월기본생활비의 100% 또는 평균로력일의 100%로 휴가기간에 국가가 보조 금을 지불해준다. 이것은 녀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충분히 휴식하고 건 강을 빨리 회복할수 있도록 튼튼히 담보한다.

너성들의 로동보호와 휴식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부인들과 임신녀성들을 보호할데 대하여 법화하는것이다.

젖먹이를 비롯하여 어린이가 있는 가정부인이나 임신녀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다른 녀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적인 부담과 육체적인 부담이 많은 사정과 관련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부인이나 임신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녀성들이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도록 하며 그들의 로동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어린이들의 건전한 양육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은 녀성은 산전산후기간, 젖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제하고있다.

로동보호법규에서는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야간로동, 로동시간밖의 로동, 휴식일로동을 시킬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한살아래의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에게 로동시간안에 30분씩 하루 2번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며 어린이를 3명이상 가진 모성근로자들에게는 6시간로동제를 적용할데 대한 의무를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부인들과 임신녀성들의 보호에 관한 규범들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이 로동생활령역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넷째로. 그것이 녀성들에게 평등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평등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보험의 권리는 근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 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면 사회보장의 권리는 근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잃었을 때 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녀성들의 로동생활에서의 평등한 권리는 반드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권리에까지 확대 되여야 한다. 녀성들이 평등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행사할 때 안정된 생활의 물질 적담보를 마련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다.

너성들에게 평등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적용조건에서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것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권리의 발생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적용조건을 오직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로동능력의 상실이라는 한가지 조건으로서만 규정하였을뿐 그외 일체 성 별이나 기타의 조건을 철저히 배제하고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을 포함하여 로동능력을 가지고 로동생활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생활과정에 로동재해나 질병, 부상 등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성별이나 민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너성들에게 평등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실시에서 녀성들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것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모든 형태들을 오직 동일한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규범에서는 일시적보조금, 년로년금, 공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 국가사회보 장보호기관에 의한 생활보장 등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모든 형태들에서 성별에 의한 일 체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평등을 보장하고있다.

녀성들에게 평등한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서 녀성들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권리를 실현하도록 한 것이다.

너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육체적면에서나 사회생활면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너성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맞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실시에서 너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장방식들을 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녀성들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서 녀성들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권리를 실현

하도록 하고있다. 사회보장의 가장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형태인 년로년금실시에서 그 적용 나이를 남자 60살과는 다르게 녀자는 55살로 규제함으로써 녀성들의 육체적특성을 고려하 고 녀성들의 장수를 보장할데 대한 당과 국가의 배려를 뚜렷이 구현하고있다.

사회보험의 한 형태인 산전산후보조금에서 녀성근로자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구현하여 보조금규모를 높이 정하고있다.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일시적보조금이나 로동능력상실보조금은 근로자들의 근속로동년한을 고려하면서 그들이 받는 월기본생활비의 일정한 비률로 지출된다면 녀성들의 산전산후보조금은 월기본생활비의 100%로 지출되도록함으로써 녀성들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건전한 양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장하고있다.

사회보험의 다른 한 형태인 특별보조금 역시 녀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장방식이다.

특별보조금제도는 국가가 어린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녀성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명이상의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녀성들에게 국가적인 물질적방조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어린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특별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녀성들이 생활상불편이 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나라의 훌륭한 아들딸로 키우도록 한다.

우리 녀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